

2-1

신용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 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5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증 류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장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15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 집 (제 출) 자 료	자 료 수 집 경 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서 제출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잔액 58.5조원으로 운용예정
- * '21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59.3조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 보증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뉴딜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 영위기업 지원
문화산업 정책보증	문화관련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제작, 유통 등)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 타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율은 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수요자 중심의 혁신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포함)

* 첨단제조,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의업종 영위기업
-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요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탈락·포기자

* 유사 지원사업 예시: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캠프'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을 복합 지원(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 스토리텔링 역량강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 등을 반영하여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대기업 연계 및 네트워킹,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과 회수전략 지원, 거래소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 신청·접수**
- 신보 스타트업 플랫폼(www.kodit.co.kr/startup)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상·하반기 연 2회 공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지속성장가능성, 사업화가능성 등

- 제출서류**
-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1차선발(서류심사)

최종선발(발표심사)

- (지원절차)

최종선발

액셀러레이팅

금융지원

성장지원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선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술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스텝업 준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원의 보증한도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 스텝업 도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뱅크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Pre-ICON 보증

- 창업 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5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www.kodit.c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내용)
 - 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 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약정 체결(고객의 자서날인)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0.7%) 수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4

보증연계투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미래성장성등급 별로 차등적용

미래성장성등급	인수한도
K1등급 ~ K6등급	30억원
K7등급 ~ K8등급	15억원
K9등급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이내

-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 처리절차** ● (보증연계투자 업무처리순서)



- 지원규모** ●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1년 지원현황 : 563억원 투자예정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전환사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2-5

투자옵션부보증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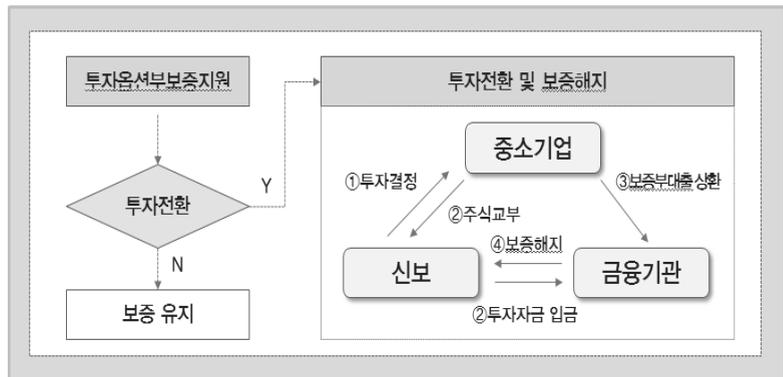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증료	• 0.5% 고정 보증료를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신청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처리절차

- 투자유선부보증 업무처리순서



지원규모

-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1년 지원현황 : 40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 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어설명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2-6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 발행을 통한 보증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대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지원 불가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변제 이행기간 3년 미만 또는 변제이행률 60% 미만 회생 조기종결 기업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업 영위 기업

지원 유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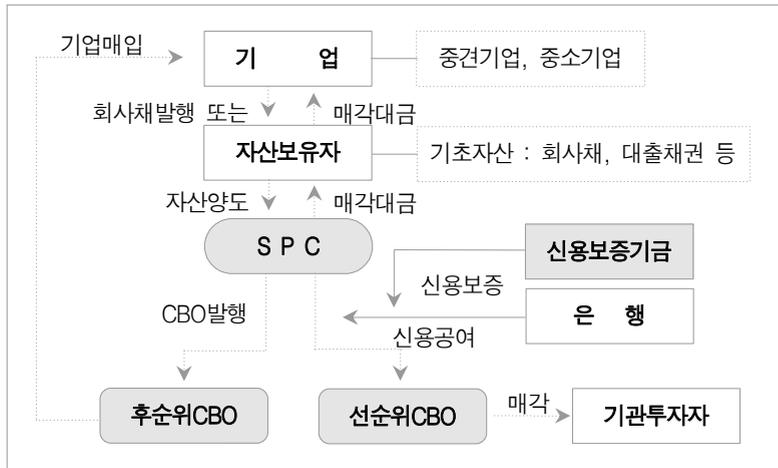
채무불이행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제 이행기간 3년 초과 & 변제이행률 60% 초과 회생 조기종결 기업
신용상태 취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개년 동안 EBITDA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미래성장성등급K5(회사채등급BB+) 이하)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총 차입금(이번 신청건 포함)이 당기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기업구조조정 종결 후 2년 이내 기업인 경우

* 지원 유의 기업의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도개요

-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 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 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한도는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① 편입한도

- 대기업

(단위: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코로나19	1,500	1,275	1,050	825	600	450	300
일반	-						

- 중견기업

(단위: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코로나19	1,050	900	750	600	450	300	150
일반	350			300	250	170	100

- 중소기업

(단위:억원)

미래성장성등급	K3이상	K4	K5	K6	K7	K8	K9	K10
코로나19	250	200	180	160	100	70	60	50
일반	200	170		140	80	50	40	30

(주1) CPA 감사보고서 비보유기업은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② 매출액·자기자본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 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Ⅲ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주)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특별대출보증 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 포함) 기준

● 발행금리

- 중소기업: 신용등급별로 2.82%(K1등급) ~ 5.42%(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신용등급별로 2.32%(AAA등급) ~ 4.72%(BB- 등급) 수준
 - 대기업: 신용등급별로 2.32%(AAA등급) ~ 10.91%(BB- 등급) 수준
- 상기 금리는 2021.11.29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채권금리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발행 시점의 채권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0.1~1.8%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신청·접수

-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 전국 영업점
 - 중견기업: 유동화보증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처리절차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응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 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3-2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각종 자금을 대한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어음상 채무에 대한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의 공사·물품공급·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등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 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이 아닌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지원대상 기업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 (상시종업원 요건 폐지)하여 폭넓은 보증지원
- * (기준)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 &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인 기업

지원규모 '22년 24.7조원 공급 예정(유동화회사보증 0.1조원 별도)

신청·접수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입차계약서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용어설명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도모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부터 예측 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주요 내용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창업멘토링을 통해 창업정보 제공 • 창업 즉시 창업자금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와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7%p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하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미래성장기반인 창업기업을 우대지원

기술력 기반의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창업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 창업기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인 기술 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별로 구분된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첼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0%~100%)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 이내 1.0% 고정보증료)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 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청년 창업기업 보증	기본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 창업후 1년 또는 1억원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보증료 0.3%p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추가 우대	<table border="1"> <tr> <td>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td> <td>창업후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td> </tr> <tr> <td>청년 테크스타 보증</td> <td>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수 청년창업기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100%)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 </td> </tr> </table>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창업후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청년 테크스타 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창업후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청년 테크스타 보증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수 청년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100%)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료 * 상품에 따라 6억원까지 적용 가능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보증료 최대 0.7%p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대상 창업후 5년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및 세부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4대 맞춤형 창업육성분야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식문화창업	• 혁신형지식서비스업 또는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가 만40~59세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창업	• (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되어 2년 경과하지 않은 기업

3-5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등)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굿잡보증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및 지식서비스·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굿잡보증

- 고용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 이상 고용증가
	쉐어링잡 (Shar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방고용) 지방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 증가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고용 (특성화고)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인 기업 제외)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 과거 1년전 대비 고용감소시 제외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보증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에 대해 신규고용인력별 보증지원 한도가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굿잡보증**

구 분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고용창출 (Track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5%)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비율 우대(90%) 보증료 0.3%p 감면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한도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고용인력 1인당 가산금액은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에 따라 차등 결정

구 분	한도가산금액(1인당)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셰어링잡(Sharing-Job) 대상기업 확대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15조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명부 신분증 사본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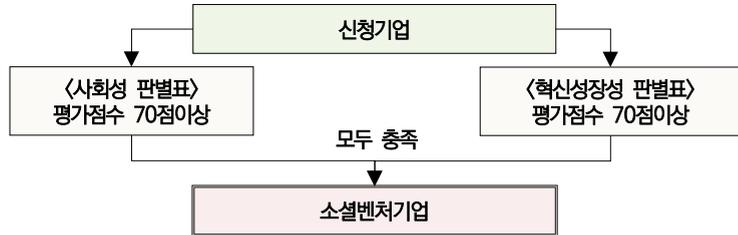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 지원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하여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적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에 해당하는 기업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 ▶ 사회적과 혁신성장성(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포함) 위주로 종합평가하며, 보증 심사시 소셜벤처 판별 동시 검토

지원내용

구 분	우 대 사 항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사정특례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5%p 감면
지원계획	(‘21)1,350억원 → (‘22)1,500억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우리 기업이 소셜벤처기업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금은 기업 스스로 판별표를 작성하여 소셜벤처 판별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사회성·혁신성장성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 판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https://sv.kibo.or.kr>) → 소셜벤처 판별 → 소셜벤처 자가진단

3-7

혁신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지원 제도

미래의 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초지능성(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서비스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우대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 분	대 상 기 업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AI,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과 정부 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포함) 보급사업 참여기업 -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 기업의 자체구축 스마트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기업 - '첫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유망 제조 스타트업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산업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 관련품목을 생산하며 별도 판별기준충족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고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3~0.5%p 감면
 - * 구축단계에 따라 0.5% 또는 0.7% 고정보증료를 적용 가능
 -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감면
 - ▶ (스마트서비스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스마트서비스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추가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4조원(정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혁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의 육성분야 및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3-8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비대면·디지털기업 육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과 비대면을 위한 기반기술인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정부 집중육성 분야이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기업 및 디지털기업
 -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기업) 쏘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Data, Network, AI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고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지원
 - (핵심기업) '비대면기업' /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감면
 - (일반기업) '디지털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최근 6개월 이내 ICT 인력 신규 고용기업에 대해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억원의 보증지원 한도가산(고용인원 1인당 최대 75백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ICT 인력 신규 고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한도가산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조원(정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공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공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비대면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중기부가 선정한 “①웨어러블 ②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③온라인 교육시스템 ④온라인 교육콘텐츠 ⑤원격근무, 화상시스템 ⑥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⑦스마트 금융 ⑧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판매 ⑨생활중개 플랫폼 ⑩스마트 상점 ⑪전자상거래 ⑫게임 ⑬콘텐츠 ⑭소통 ⑮여행·숙박·장거리이동 ⑯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⑰드론·무인기, 자율차 ⑱빅데이터, AI ⑲가상현실(AR/VR) ⑳클라우드 ㉑로봇 ㉒사물인터넷(IoT) ㉓지능형/차세대 반도체 ㉔5G ㉕정보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3-9

클린플러스 보증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한 보증상품

별도의 중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용자기반의 간편하고 안정적인 운영자금 집행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고객의 보증부대출 이용 편의성을 모두 향상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외주비 포함), 인건비, 임차료 등의 결제 목적 회전성 전자자금에 대해 보증지원(근보증)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근보증 채무에 대해 우대지원
 - ▶ 보증비율 95%(최초 취급후 5년간)
 - ▶ 보증료 0.5%p 감면(최초 취급후 5년간)
 - ▶ 협약체결기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단, 하나은행은 '22.1월 이후 시행 예정)
- 모니터링 실시
 - (자금집행 모니터링) 중개사업자는 보증기업이 플랫폼에 입력한 자금용도 정보와 자금용도별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일치여부 등을 검증
 - (이상거래 모니터링) 기보는 중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대출요청 정보에 대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하며, 필요할 경우 사전 통제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500억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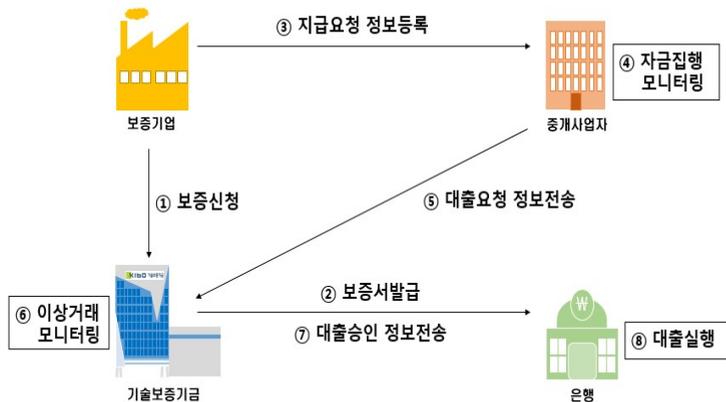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서식 -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기금 수집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 (보증기업)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요청 정보 입력
- (중개사업자) 보증기업이 입력한 정보의 이상여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기금 및 은행에 대출요청 정보 전송
- (은행) 대출요청 정보에 따라 지급상대처에 대출실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용어설명

클린플러스보증 플랫폼 : 기업이 대출요청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웹 또는 모바일 형식의 시스템

3-10

원클릭보증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보증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빅데이터 기반 고객지향적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잔액 없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한 보증가능여부 확인

- 건별 운전자금 1억원까지 신속한 기술평가 및 보증지원
 - ▶ 보증비율 100%(최초 취급후 3년 초과시 단계적 인하)
 - ▶ 보증료 0.3%p 감면
- 운영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원클릭보증 외 기금 보증금액 포함)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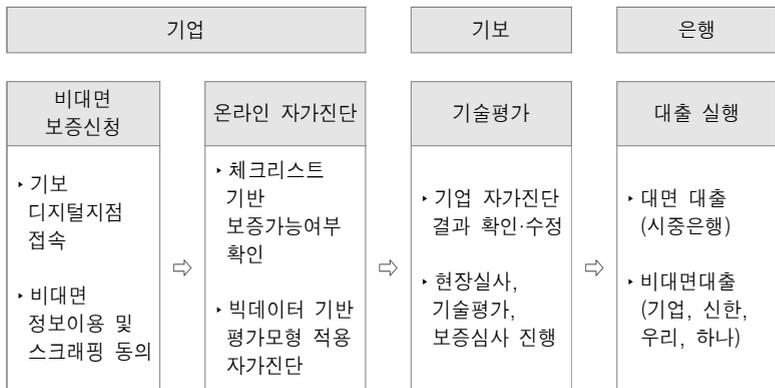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 고객은 영업점 방문없이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기술력 자가진단을 통해 보증결과를 예측하고, 자동으로 보증신청 진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3-11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에 한함
- 신청요건 :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계약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계약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 선판매계약금액, 투자계약금액,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차입금 등

* 선판매계약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에 의해 유통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 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 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 지원 금액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④ 선판매계약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10%)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분야, 한류 콘텐츠, 융복합콘텐츠,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BBB	50% 이내	
BB	4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감(-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
B	30% 이내	

-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 한류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제작하는 문화콘텐츠
- * 융복합콘텐츠: 기존 콘텐츠 영역에 기술, 타장르, 타산업와의 다각적인 융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 * 유통사가 국내 OTT인 콘텐츠: 국내 자본이 50% 이상인 OTT 사업자에 유통하는 문화콘텐츠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콘텐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문화콘텐츠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400억원

-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2)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7)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00)
 -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42-480-1322)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 061-900-6267)

Q&A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3-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수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연구개발업 / 전문디자인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교육지원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중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공연산업/광고산업 ▶ 방송산업 ▶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 ▶ 정보서비스산업 ▶ 출판산업/캐릭터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용역공급계약前이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이내
 - 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 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이하		2억원	30% 이내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문화콘텐츠 금융센터
 - * 방송, 영화 등 10개 장르 영위 기업은 유통계약 전이라도 "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 전담 취급하고, 그 외에는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2-3215-5972)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31-725-7857)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51-726-1300)
 -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 042-480-1322)

3-13

기후환경보증

기후·환경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에 필요자금을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산업 등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

구 분	대 상 기 업
녹색성장산업	•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산업 영위기업
환경산업	• 물, 환경복원·복구, 환경안전·보건, 자원순환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위기업
에너지산업	• 청정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과 연관된 산업 영위기업
기후기술기업	• 기후변화에 대응·적응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 자원을 개발·확보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저탄소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이하 "기후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기후·환경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운전 또는 시설자금 우대지원
-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0.2%p)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3-14

신재생에너지보증

탄소중립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보증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분야 ①발전사업 영위 기업(발전기업) 또는 ②관련 기술 보유·품목 생산 기업(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 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시설자금 지원)
 -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운전/시설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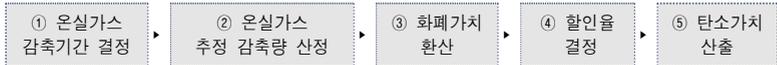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평가방법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술보증기금의 전용 평가모형(탄소가치평가 모형·기후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후 보증

* 【탄소가치평가모형】 기금이 개발한 고난도 가치평가체계로서 기업이 기후환경기술·프로젝트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는 모델



지원내용

- 추가 한도지원 : 기존 운전자금 산정 한도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

*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

500백만원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	200백만원 ^{탄소가치} (탄소가치 산출액)	=	70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 가능금액)
--------------------------	---	--------------------------------------	---	----------------------------------------------------------------

● 기타 우대사항

- 보증료 : (발전기업) 0.5% 고정보증료를 적용 (산업기업) 0.2%p 감면 적용
- 보증비율 : 95% 적용

처리절차

구 분	단 계 별	주 요 내 용
한국에너지공단(센터)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 보증기관에 추천
보증기관	보증 상담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
	현장조사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조사 실시
	심사·승인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탄소가치(기후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보증약정 후 은행 등 금융기관(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약정/실행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수신 후 대출 약정/실행 취급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신청·접수 : www.knrec.or.kr
 (공지사항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접수 안내” 참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추진단 신재생금융팀 (☎ 051-606-7383, 7392, 7359)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83~4)
- ※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문 참조

용어설명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력, 수열, 지열 등 산·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산·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 한국에너지공단 산·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해당하는 설비

기후기술평가모형(CTRS)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제반 기술로서 해당 기술·사업이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매출성장, 고용창출 등 미래성장가능성)를 기술사업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모델

3-15

R&D 보증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등)
-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지원내용

-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 자금(기업단위)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완료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사업화단계 자금(과제단위)

-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전담기관의 R&D과제 : 중기부 R&D과제(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中 최근 3년 이내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완료)" 판정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 과제단위 사업화 또는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초기)운전자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혁신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단위의 기본증금액에 불구하고, R&D과제단위로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원
* (현행) R&D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단위로 지원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5조 8,000억원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단 계 별	취 급 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영업점 방문 또는 디지털지점(인터넷) 신청
↓		
상담	영업점 담당자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 진행여부 결정 및 절차안내
↓		
서류 제출	신청기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필요서류는 종류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지점에 제출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 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사전)검토 후 현장실사 실시하여 기술성과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영업점 담당자	기술평가결과,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승인시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대표적인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모형 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핵심역량수준과 지속가능수준(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과제단위 R&D사업화모형 평가표 : 사업화 주체에 대한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R&D 과제 자체의 기술성·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3-16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 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자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보증비용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유의사항

- ▶ 보증지원은 등록된 특허권에 한하여 운용되며, 여타 지식재산(심사청구된 출원 특허, 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평가보증으로 취급 가능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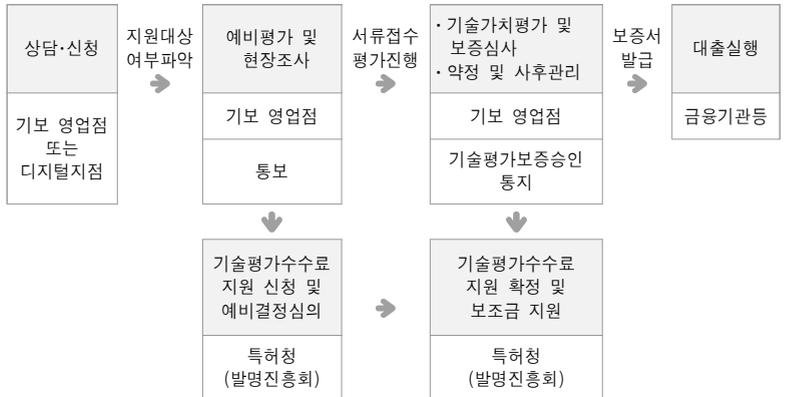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 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은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출원중 특허, S/W,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3-17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의 사업화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지식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 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용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지원규모 ● '22년 지원규모 : 1조 5,000억원

- 신청·접수**
- '22.1.1.~'22.12.31. 상시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

제출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 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온라인 자료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신분증 사본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거주주택)	▷ 디지털지점에서 온라인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금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or 스크래핑 (선택)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대표자·법인에 대한 행정정보 이용항목 사전동의 ▷ 스크래핑 방식은 디지털지점에서 고객 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자료제출 방식을 의미함	사전 동의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 기금수집서류 발급수수료는 기금 부담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Q&A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 |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 지원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
| 신청·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 보증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 보증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 문의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7-3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 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입자 구분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대출기간 180일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모든 수입자와의 외상 수출거래 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료 인하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주주현황표, 고객정보이용조회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취급은행

-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부산) ('21.12월 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5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small>128</small>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small>129</small>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 험 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 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 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